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관학협력”이란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 개발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 또는 사업을 말함(안 제2조)

나. 주요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안 제4조)

-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연구
-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건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다. 시장·총장은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 및 사업 시행전에 협력교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라. 시장·총장은 관학협력 연구 또는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관학협력 시행시 적극 반영함.(안 제7조)

마. 시장·총장은 원활한 관학협력을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협약서 이행에 상호 협력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인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개발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협력교수”란 시와 관학협력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교수를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 성립) 관학협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갖고 있는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시책개발, 교육발전 등에 대해 합의 공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협력사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 추진한다.

1.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연구
3.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건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계획수립) 시장·총장은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 및 사업 시행 전에 협력교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책무) ①시장은 관학협력 추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따른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한다.

②총장은 협력교수 선정과 관학협력 연구 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평가) 시장·총장은 관학협력 연구 또는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관학협력 시행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사항) 시장·총장은 원활한 관학협력을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협약서 이행에 상호 협력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관련조례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조례안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음

4. 작 성 자

- 기획행정위원회 류 수 용 의원